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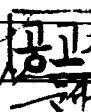







공고

공고제 1호

기안용지

분류기호 1. 1439. 5 문서번호		(전화번호 367)		원결규정 3 조 25 호 부시장 권결사항	
처리기한	기안자	결재자			
시행일자 1970. 5. 20	보진제 1과 유영진	제 1 부시장			
보존년한	기안일자 10. 5. 4	원			
보조기관	보진사회국장	  			
	보진제 1과장				
	보진행정계장				
연조	예산과장 회계계장 예산과장 회계심사계장	 			
경수참조	유신조	각안참조	통	발	정서
제 목	신사리 묘지비 분묘이장 공고				
(제 1 안) 기부결재					
도시계획 사업에 수반하여 금번 제 3 차 번에 해당되는 구역의 분묘이장 (가장)을 위하여 다음 각안을 공고 시행코지 합니다					
<div data-bbox="173 1395 302 1598"> <p>과추산</p>  </div>	가		공고료지출안 (안 2 와 같음)		
	나		공고안 (안 3 과 같음)		
	다		각구지시안 (안 4 와 같음)		
	라		공보실 통보안 (안 5 와 같음)		
	<div data-bbox="998 1422 1114 1617"> <p>회주 조사</p>  </div>				

사무특별자-1

시행 상세지침보도영(공)

461

(제 2 안) 응고료지출

1. 응고료 拾陸萬六千圓正 2,100,000

2. 세액

물 명	주요	수량	단가	금액	부 기
중앙 일간지(2개)	3회	45행	200	1,080,000	단행 45행 200 × 3 = 1,080,000
" (석간)	"	"	200	1,080,000	단행 45행 200 × 3 = 1,080,000
계				2,160,000	

3. 지출방법 : 청구에 의하여 직불함

4. 지출과목 : 보진비, 보진관리비, 묘지관리비, 수수로보수비

(제 3 안) 응고안

서울특별시응고제 호, 분묘이장공고

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1차년도 해당지역은 68년에 제2차년도 해당지역은 69년에 이미 이장(가장) 한바 있으며 제3차년도 해당지역을 이장 고자 마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1항 제 16 조 제 2 항, 동 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고 합니다

1. 이장(가장)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사동 산 93 일부 산 48의 2 지역 분묘수 약 1,000기
 2. 이장(가장) 신고 및 기간 (1개월) 1970. 5. 31. 부터 1970. 6. 30. 까지
 3. 이장(가장) 요령
- . . . 현지 묘지 사무소 에의 이장 확인을 받은후

표지 관~~활~~^상동 (시이문구 주식 제 2 등) 에 신고하고
 이장 (개장) 하신 ~~이름~~ 이후 매장이나 회장
 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
4. 이장비 보상

전기 3 항의 절차에 의하여 70. 5. 21.
 이후 라진 이장 하신 번모자가 매장 또는
 회장 확인서에 인장증명문 첨부 하셔서 ~~이름~~ 청구
 하시면 70. 7. 31 한 보상 합니다.
 (청구서 용지는 당시 ~~보안재귀과~~ ~~배부~~ ~~부하~~
 시립 신사외도지 사무소에 배부함)

5. 상기 기간 내에 이장치 앞은 분모는 무인
 분모로 간주하고 당시가 이장 (발굴후회장)
 한후 합동 분모를 설치 하게 됩니다.

6. 기타 상세 한것은 당시 보진제 1과 (75-6647)
 및 각구침 사회과, 신사리묘지 사무소에
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1970. 5. 21. (결재후일자이감)
 서울특별시

무직사
 장
 홍
 제
 사
 자
 자
 장
 홍

(제 4 안)

수 신 수 신 처 참 조
 제 목 등 등 권

서울특별시

462

1. 별첨과 같이 방침에 의하여 신사의
 묘지의 70년도 해당구역내의 분묘를 이장케
 되었으니 이 내용을 각동에 이첩하고 통반에
 회람토록 하여 전주민에게 널리 알릴것
 2. 세대분구에서는 수신2등에 지시하여
 신고증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할것

첨부 음고문사본 1부
 수신처 서침 1~9

(제5안)

수신 음보실장
 서무 동진
 당시의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신사의
 묘지를 이전기로 되었으며 음반 제3차년도 해당
 지역을 이장케 되었으니 이 내용을 전주민에게
 알리기 위하여 각방송죽에 응지사항으로서 방송죽
 하여 주시고 아울러 중앙 일간지에 실반기사로
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

첨부 음고문사본 1부 끝

분묘이장실적

년도	68년	69년	70년
총공사구역	약 5,000 평	6,000 평	8,000 평

구분	68년	69년	70년
대관	354	198	
소관	3,389	5,349	
소관합장	10	4	
소관방치	6112	1,002	
아묘		546	
공묘발굴	452	512	
계	11,915	11,651	

7-5

서울특별시

463

※ 第三次工事地域ニ由

決定シタルニ由 (01. 6. 1. 附録 415~310)

都市計劃局長ニ由リ指示 (附録添付)

後者ハ 1次及 3次ニ由リ指示
シタルニ由

○

7-7

465

7